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05
----------	-------

발의연월일 : 2026. 7. 10.

발 의 자 : 복기왕·박용갑·이광희
이상식·김영배·최혁진
양부남·김한규·염태영
손명수·김우영·문진석
송재봉·강준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전체 소상공인 등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23.1%에서 2025년 7월 기준 5.3%로 급감하는 등 안전망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 가입률이 저하된 근본적인 원인으로서는 보험료 지원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험료 지원 규모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 지적됨.

이에 소상공인의 보험료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

로써,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민간 보험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가의 재난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등).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 본문에”를 “제1항에”로 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목적물별로 그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 ----- ----- ----- ----- .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목적물별로 그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 -----.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